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25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 용혜인 · 김남희 · 소병훈

김영환 · 한창민 · 김영배

서미화 · 김재원 · 김종민

김성환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최근 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의 죄로 기소 및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바 있음.

그간 상당수의 학계, 시민사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므로,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들은 약 3개월간 16회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상당수 인사들을 승진 및 공직 임용하는 등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시행 및 권한대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및 직무수행불능 시의 국가 혼란을 예 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현상유지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 재의요구권, 계엄선포권의 행사는 제한됨(안 제6조제1항).
- 라.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예정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 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마.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제4항).
- 바. 「형법」 상 내란의 죄 및 「형법」 상 외환의 죄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구속됐을 시는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으로 보며, 권한대행 기간은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때부터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로 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
- 사.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 시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 행자의 권한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궐위"(闕位)란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존 재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2. "사고"(事故)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형법」상 내란의 죄 및 「형법」상 외환의 죄에 따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대통령의 질병·요양 및 해외순방,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 3. "사고(事故)로 인한 직무수행불능"이란 직무정지, 구속 등의 제2 호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 4. "대통령 권한대행자"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시행 및 권한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대통령의 권한 행사 금지 등) ①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보좌한다.
- 제5조(권한대행의 순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 조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된다.
- 제6조(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 부의권
 - 2. 「대한민국헌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 3. 「대한민국헌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발의권

- 4.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권
- 5.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계엄선포권.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를 예정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래의 직무도 수행한다.
- ④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대한민 국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 를 기준으로 한다.
- 제7조(궐위 시 권한대행)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 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임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 제8조(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권한대행) ① 사고로 인한 직무수 행불능 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통지한 기 간 동안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대행 기간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시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 2. 「형법」 상 내란의 죄 및 「형법」 상 외환의 죄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시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때부터형사소송법 제105조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다만, 형사소송법 제101조 등에 따른 구속의집행정지는 석방의 예외로 한다.
- ③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권한대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시된 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된다.
- 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권한대행의 개시 및 종료 시 이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